

제147회-재무건설위 제2차부록
도시관리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문화·복지·환경1등구

- 2005年度 -

主 要 業 務



종 로

都市管理局

報 告 順 序

☐ 일반현황

- 부서별 소관업무, 직원현황

☐ 주 요 업 무

- 주 택 과
- 도시계획과
- 건 축 과
- 공원녹지과

일 반 현 황

1. 도시관리국 기구 : 4과 18개팀, 130명

□ 주택과 (5개 업무팀)

- 주택행정의 종합 및 민영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시민아파트 관리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 무허가전물 발생방지 및 철거정리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과 (6개 업무팀)

- 도시관리계획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건축과 (4개 업무팀)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설 위험시설물 관리 및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과 (3개 업무팀)

- 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국립공원 및 그린벨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2. 직원현황

(2005.2.1일 현재)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행정직							기술직							기능	청정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30	28	1	8	15	3	1	66	1	3	12	23	21	6	25	11	
주 택 과	37	18	1	5	11		1	11	1		1	4	4	1	8		
도시계획과	32	6		3	2	3		20		1	4	6	8	1	4		
건 축 과	22	1			1			21		1	4	10	4	2			
공원녹지과	39	1			1			14		1	3	3	5	2	13	11	

☐ **시민아파트 --- 21개동 1,061호**

청 운	9개동 486세대	11개동중 2개동 (1동 58세대, 11동 33세대) 철거
승인 삼일	6개동 290세대	상가 117호
창신 삼일	6개동 285세대	상가 114호

☐ **주 택 — 47,902호**

주 택 현 황				비 고
계	단 독	연립주택	아파트	
47,902	28,004 (58.4%)	12,581 (26.3%)	7,317 (15.3%)	

☐ **용도지역 현황**

용 도 지 역		면적 (km ²)	비율 (%)	비 고
계		23.91	100.0	
주 거 지 역	소계	9.146	38.2	
	전용주거	2.180	9.1	
	일반주거	6.870	28.7	
	준주거	0.096	0.4	
상 업 지 역		3.773	15.8	
녹 지 지 역		10.991	46.0	

□ 공원현황

○ 공 원 - 52개소 10,503,137.2㎡ (3,177,184.7평)

구 분	계		시 설		미 시 설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52	10,503,137.2	37	10,456,754.7	15	46,382.5
국 립 공 원	1	4,328,000.0	1	4,328,000.0	-	-
도시자연공원	3	3,734,065.9	3	3,734,065.9	-	-
근 립 공 원	21	2,379,933.9	18	2,370,353.9	3	9,580.0
어린이공원	27	61,137.4	15	24,334.9	12	36,802.5

□ 녹지현황

○ 임 야 - 9.57km² (행정구역의 40%)

계	국 유 립	공 유 립	사 유 립
9.57km²	7.91	0.14	1.52
비 율 (%)	82.65	1.47	15.88

○ 개발제한구역 - 8.32km² (행정구역의 35.3%)

계	임 야	전	대 지	잡종지	기 타
8.32km²	7.34	0.58	0.16	0.07	0.17
비 율 (%)	86.6	6.8	3.7	0.9	2.0

□ 조경현황

○ 가로수 현황 - 7,412주

수종	은행	버즘	벚	무궁화	느티	소나무	기타	
계	7,412	4,783	1,671	145	88	333	198	194

住 宅 課

청운지구 시민아파트 정리

서울시 시민아파트 정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으로 정리중인 청운시민아파트를 조속히 철거하고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함.

☐ 추진개요

○ 대 상 — '70.4월 준공, 안전등급 D급 노후 시민아파트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동수	호수	비고
청운동 산 4-25일대	24,968.4㎡	18,828㎡ (5,700평)	11개동	577호	

☐ 추진실적

- 건물철거 : 2개동 91세대 철거(1,11棟)
- 2003. 9. 18 ~ : 철거업체 계약
- 2003.10 : 수용재결(52세대)
- 2003. 11.12 ~ 11.15 : 수용에 의한 소유권(서울특별시)이전 완료
- 2004. 7. 27 : 행정대집행정지가처분(대법원 항고 기각)
- 2004. 11.11 : 미이주 26세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 2004. 11 ~ 현재 : 서울시에서 민사법 절차에 의한 명도소송 진행

☐ 추진계획

- 명도소송 결과 후 철거집행(6월말까지 철거예정)

☐ 문제점

- 인왕산자연공원지정에 대한 소송 진행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으로 최종 대법원 판결결과 이후 명도소송을 결정토록 명도소송 결심공판을 연기요구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음.
- 수용재결 건물주 52세대 특별분양권 상실로 철거시 반발 예상

삼일시민아파트 정리

서울시 시민아파트 정리계획 및 주민자체철거동의 방식에 의거 철거정리 중인 창신·송인 삼일시민아파트 주거부분을 보상 완료하여 조기에 철거 정리함으로써 재난위험 해소 및 도심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함.

☐ 정리대상아파트 - 2개단지 12개동 575세대

단지별	위 치	건물현황		비고
		상가	아파트	
창신삼일아파트	창신동 400-4	1~2층(117호)	1~6동(3~7층) 285세대	
송인삼일아파트	송인동 1435	1~2층(114호)	7~12동(3~7층) 290세대	

※ 1970년 준공된 안전등급 D급 위험시설물중 주거(아파트)부분만 철거

☐ 추진실적

- 창신삼일시민아파트 보상현황(대상 6개동 285세대)
 - 가옥주 : 285세대중 보상 267세대, 미보상 18세대
 - 세입자 : 262세대중 보상 236세대, 미보상 26세대
- 송인삼일시민아파트 보상현황(대상 6개동 290세대)
 - 가옥주 : 290세대중 보상 288세대, 미보상 2세대
 - 세입자 : 303세대중 보상 285세대, 미보상 18세대

☐ 향후 추진계획

- 명도소송에 의한 세입자 이주 조치 후 철거
 - 송인삼일아파트 : 3월 ~ 6월 철거예정
 - 창신삼일아파트 : 4월 ~ 7월 철거예정

주거환경개선사업

□ 2004년까지 추진실적 : 총17개지구 사업비 79,170백만원 집행

- 도로 개 설 : B=2~8m, L=12,119m(16개지구 - 창신3 제외)
- 마을회관(경로당) : 6개소 915㎡(창신2, 원서, 연진, 동송, 행촌, 송인)
- 어린이놀이터설치 : 4개소 1,581.3㎡(창신, 동송, 행촌, 송인)
- 어린이집 신 축 : 1개소 198㎡(창신)
- 주차장 설 치 : 4개지구 2,374㎡(행촌, 송인, 동송, 누상·옥인)

□ 2005년 추진계획 : 총사업비 5,087백만원

- 도로개설 : 2개지구 B=2~6m, L=269m(행촌, 창신3)
- 어린이집 : 1개동 193㎡(창신1)
- 시설녹지 : 2,088㎡(행촌)
- 보상시행 : 2개지구(행촌, 창신3)

재건축사업

□ 추진현황

조 합 명	사업위치	조합원수	건 립 규 모	추 진 사 항
명륜맨션 재건축조합	명륜동1가 23	28	지하1층, 지상12층 1개동 55세대	- 03.06.11 조합설립인가 - 03.06.28 사업계획승인 - 04.04.06 공사착공 - 05.10 준공예정
무악연립 재건축조합	무악동 59-1일대	536	지하2층, 지상11~17층 17개동 811세대	- 98.04.30 조합설립인가 - 04.05.03 사업시행인가 - 05.05 착공예정
무악연립제2 재건축조합	무악동 71-1외12	60	지하2층, 지상6~15층 3개동 152세대	- 02.12.24 조합설립인가 - 03.05.09 사업계획승인신청 - 05.03 사업시행인가예정 - 05.06 착공예정

주택 재개발사업

□ 관리처분 및 착공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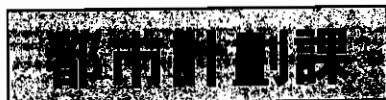
구역명	위 치	규모 · 면적	추진 현황
승 인 제4구역	승인1동 20번지일대	- 지하1~2층 지상6~12층 6개동, 416세대 - 면적: 24,256.20㎡	- 2001.11.01 : 구역지정 - 2002.01.28 : 조합설립인가 - 2003.12.02 : 사업시행인가 - 2005.04 : 관리처분예정 - 2005.06 : 착공예정
승 인 제5구역	승인2동 766번지 일대	- 지하2층/지상20층 6개동, 292세대 - 면적: 12,401.08㎡	- 2003.03.21 : 구역지정 - 2003.05.26 : 조합설립인가 - 2004.08.31 : 사업시행인가 - 2005.03 : 관리처분예정 - 2005.05 : 착공예정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재검토 대상

구역명	위 치	규모 · 면적	추진 현황
신 영 제1구역	신영동 158번지 일대	- 지하1/지상4층 연립주택 8개동, 116세대 - 면적: 9,541㎡	- 2000.06.01 : 재개발 구역지정 - 2003.07.08 : 조합설립인가 ※ 인접중앙빌라 등 재개발 구역 확대여부 및 사업계획타당성 재검토
삼 청 제2구역	삼청동 산2-53 번지 일대	- 면적: 12,861.8㎡ (국·공유지: 12,754.8㎡, 사유지: 107㎡)	- 1986.12.30 : 주택재개발구역지정 - 2004.12.10 : 공공계획 학술용역 ※ 국공유지 매입 등 주민부담금 과중으로 사업계획 타당성 재검토
승 인 제3구역	승인동 1422번지 일대	- 면적: 19,276.7㎡	- 1984.11.17 : 재개발구역지정 - 2002.06.05 : 구역변경지정결정고시 (삼일시민아파트해제) - 2004.07.27 : 지구단위계획 용역 ※ 신설동 종합시장과 승인맨션상가 (아파트 110세대, 상가 142호)가 포함되어 구역분할 또는 해제 등 재검토 필요

□ 주택재개발기본계획 고시 - 11개소 (추진위원회승인: 7개 구역)

구역명	위 치	규모·면적	추진현황
충신 제1구역	충신동 1번지일대	- 용적률 170%이하 - 7층/12층이하 - 면적: 29,679.07㎡	- 2004. 5.31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4. 6.25 : 기본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 2005. 2. 7 : 구역지정 신청(구→시)
승인 제2구역	승인동 61번지일대	- 용적률 190%이하 - 12층이하 - 면적: 20,353.97㎡	- 2004. 6.25 : 기본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 2004. 8. 3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승인
무악 제2구역	무악동 47번지일대	- 용적률 210%이하 - 면적: 11,128.1㎡	- 2004. 6.25 : 기본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 2004. 9.13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승인
명륜4가 구역	명륜4가 127번지일대	- 용적률 190%이하 - 12층이하 - 면적: 8,887.6㎡	- 2004. 6.25 : 기본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 2004. 9.13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승인
이화 구역	이화동 9번지일대	- 용적률 170%이하 - 7층/12층이하 - 면적: 17,220.50㎡	- 2004. 6.25 : 기본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 2004. 9.24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승인
육인 1구역	육인동 47번지일대	- 용적률 170%이하 - 5층/7층이하 - 면적: 29,497.30㎡	- 2004. 6.25 : 기본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 2004. 11.24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승인
세부 1구역	세부동 127번지일대	- 용적률 170%이하 - 기타/7층이하 - 면적: 41,046.51㎡	- 2004. 6.25 : 기본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 2004.12. 4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승인
누하동 지역	누하동 8번지일대	- 용적률 170%이하 - 기타/7층이하 - 면적: 23,000㎡	- 2004. 6.25 : 기본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흥파동 지역	흥파동 5번지일대	- 용적률 210%이하 - 면적: 31,000㎡	- 2004. 6.25 : 기본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승인동 지역	승인동 10번지일대	- 용적률 190%이하 - 12층이하 - 17,000㎡	- 2004. 6.25 : 기본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창신동 지역	창신동 23번지일대	- 용적률 190%이하 - 12층이하 - 면적: 35,000㎡	- 2004. 6.25 : 기본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교남 뉴타운지구 개발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평동 164번지 1,697필지(226,870㎡)
- 용역기간 : 04.01.30 ~ 05.04.30 ※ 용역비: 500백만원 (구비 250, 사비 250)
- 용역사 : (주)금호엔지니어링, (주)하우드건축사무소

□ 추진실적

- 2003.11.18 :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시)
- 2003.01.30 :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 2004.02 ~ 12 : 기초조사/지역현황 분석/기본구상/개발계획수립
- 2004.09~12 : 주민 설명회 개최(2회)
- 2004.11.05 :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안)구의회 보고(재무건설위)
- 2004.12.31 :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안) 승인 신청(구→시)
- 2005.01 ~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시)

□ 향후계획

- 2005.02~04 :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안) 승인(시) / 후속 장비계획 수립 및 전락사업 추진(구)

제3차 뉴타운지구 지정 계획

□ 뉴타운 후보지 신청현황

- 위 치 : 창신1·2·3동, 송인1동 일대
- 면 적 : 844,573㎡(254,090평)

□ 추진일정

- 2004.04.03 : 제3차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계획 통보(시→구)
- 2004.12.31 : 뉴타운지구 후보지 현장조사 요청(구→시)
- 2005.01.22 : 뉴타운지구 후보지 변경(추가)요청(구→시)
- 2005.02~04 : 뉴타운 후보지 현장조사 및 선정(시)
- 2005 상반기 : 개발구상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구)
- 2005 하반기 : 뉴타운지구 지정(시)

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33,190.1㎡)
- 사업시행자 : 종로구청장 ※ 업무수탁자 - 대한토지신탁(주)
- 사업기간 : 2004. 6. ~ 2009. 5. ※ 소요예산: 비예산(민간자금)

□ 추진현황

- 1982. 4. 26 : 세운상가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고시
- 2003. 6~11 : 도심형재개발사업 모델개발 용역 수행(서울시)
- 2004. 1. 30 : 세운상가4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고시(서울시)
- 2004. 5. 25 : 사업시행자 지정(시행자: 종로구청장)
- 2004. 7. 6 : 우선협상대상 신탁사 선정 ※대한토지신탁(주)
- 2004. 8. 13 : 주민대표회의 구성(위원장 : 배정지)
- 2004. 9. 21 : 국제지명현상설계 작품 선정

□ 건축계획(안)

- 대지면적 : 26,129㎡
- 건축면적 : 15,651㎡(59.9%)
- 건축연면적 : 329,226㎡(720%)
- 층 수 : 지하6층/지상25층(최고높이:90m)

□ 추진계획

- 2005. 3. : 구역 변경지정
- 2005. 6.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고시
- 2005. 9.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고시
- 2005.11. : 착공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 구역지정 — 15개 구역 97개 지구(완료40,진행12,미시행45)

☐ 진행중인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 및 계획

연번	구역명	지구	대지위치	사 업 개 요				시행자	2005년 추진계획
				시행면적 (㎡)	연면적(용도) (㎡)	층수 (층/하)	시행기간		
1	도림 구역	21	도림동 32-1일대	2,127.8	9,989.39 (종교)	8/3	'98.10.31~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 사업완료
2	산문로 2구역	1	산문로1가 134-2일대	5,429.7	63,138.95 (업무)	24/6	'98.1.30~ '05.4.30	조합:현종혁	○ 사업완료
		3	산문로1가 197일대	5,368.7	57,953.36 (업무)	20/7	'89.6.27~	기림종합건설	○ 공사제개
		5	산문로2가 91-4일대	5,731.9	59,000이하 (업무)	15/7	~	~	○ 구역변경추진
		8	산문로2가 106-5일대	7,052.4	58,821.68 (업무,공동주택)	18/7	'93.6.23~ '03.12.22	보스코산업 (주)최유용	○ 사업완료
3	청진 구역	5	청진동 188번지	3,567.8	36,000이하 (업무)	20/7	~	~	○ 구역변경추진
		6	청진동 166일대	8,655.5	96,635.85 (업무)	20/7	'01.7.2~ '05.1.1	트메이에 건설-주	○ 골조공사
4	사직 1구역	-	사직동 54일대	40,128	205,000이하 (공동주택)	14/4	'01.10.11~ '06.10.10	재개발조합 김 교 천	○ 골조공사
5	중학 구역	-	중학동 77일대	8,163.3	69,490이하 (업무)	14/6	'03.2.24 ~ '07.2.23	인크레스코 (주)김동섭	
6	공평 구역	15, 16	인사동 87번지	13,767.7	147,838.28 (업무)	19/9	~	~	○ 구역변경추진
7	세운 상가4	-	예지동 85일대	33,190.1	188,913.0 (업무)	25/-	~	종로구청장	○ 시행인가
8	세운 상가2	-	장사동 67일대	38,791.4	227,550.0	25/-	~	~	○ 구역변경추진
9	익선 구역	-	익선동 165일대	31,121.5	233,660이하	14/5	~	~	○ 추진위 구성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 현 황

○ 기결정 구역 ---- 8개구역 3,284,576㎡

연번	구역	면적(㎡)	결정일	주요내용
1	동대문	270,230	2002. 4. 8	왕산로 남측 불력단위 개발, 북측 공동건축
2	인사동	122,200	2002. 1.29	한옥지역 및 기 개발지역별 높이 규제에 따른 차등 건폐율 완화(80%이하) 적용
3	돈화문로	662,701	1988. 8.26	가로구역별 집단규제 방식을 적용 대지규모의 최소·최대한도내에서 공동·개별건축 및 높이규제
4	대학로	1,018,300	1988. 8.26	도시설계로 수립되어 개별 필지별 획지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 및 유도계획으로 결정
5	종로·세종로	612,782	1983. 8. 2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 대하여 환경보존과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6	부암동	148,760	2004. 4.20	청계천과 조화되는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특성과 도시기반시설을 감안한 균형 있는 적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7	종로 2,3가	231,323	2004. 7.26	청계천과 조화되는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특성과 도시기반시설을 감안한 균형 있는 적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8	승인동	218,280	2004.12.30	청계천과 조화되는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특성과 도시기반시설을 감안한 균형 있는 적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 추진중인 구역 ---- 5개구역 1,697,597㎡

연번	구역	면적(㎡)	용역기간	주요내용
1	돈화문로 (2차 재정비)	525,271	'04.10.26 ~'05.12.31	도심부개발과 지역적특성을 고려한 전통적 도시보전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
2	대학로 (재정비)	477,346 (신규:101,050)	'03.7.7 ~'05.2.28	대학로를 쾌적하고 문화적인 정취를 지닌 명소로 조성
3	종로2,3가	231,323 (신규:116,248)	'03.12.26 ~'05.1.28	청계천복원사업을 계기로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기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재정비하여 청계천복원 효과 극대화
4	종로·세종로 (종로4,5,6가)	247,176 (신규:42,264)	'04.5.31 ~'05.8.23	
5	승인동	218,280(신규)	'04.7.27~ '05.10.19	

□ 향후계획

- 2006년도에 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학로 지구단위계획중 미완료 구간을 정비하고 종로·세종로 잔여구간은 2008년까지 재정비를 완료토록하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사업을 완료코자 함.

종로 Up-grade 광고물 정비

□ 사업개요

- 정비구간·물량 : 종로1가~종로6가 도로변 2.8km(1,987개 간판)
- 사업비 : 약 5,435백만원(시비)

□ 추진현황

- 사업추진 업체 선정 : 45개소(디자인용역 4, 간판제작 41)
- 추진실적 : 538개 간판 설치완료(정비대상 대비 약 27%)

□ 향후계획(2005. 12월 사업완료 목표)

- 현장방문을 통한 미동의 점포주 직접면담설득 추진
-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실시 및 프랜차이즈 체인업체 본사에 사업 참여 강력 촉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 추진 개요

- 대상 : 2차선이상 도로변 및 이면도로상 불법광고물
- 내용 : 불법광고물의 자율정비촉구 및 강제 병행

□ 추진계획

- 1단계 : 집중홍보 및 준비
 - 불법광고물 정비시책 홍보 / 불법광고물 철거업체 계약 /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명령
- 2단계 : 실행
 - 마이행업소 이행강제금부과 및 행정대집행제고 / 불법광고물 제작업소 파악 행정조치

□ 향후일정

진행단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불법광고물조사	---	---										
행정절차(시정명령, 제고, 대집행안내 등)		---	---									
행정대집행(철거 등)			---	---	---	---	---	---				
사후관리										---	---	---

建 築 課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계획

□ 추진목표

- 분야별 단속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 위반건축물 사후관리 및 정비철저

□ 추진개요

- 건축허가시 건축행정절차안내 리플릿 배부
- 위반사항 적발시 단계별 행정조치(위반건축물표기,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계획 홍보

□ 2005년도 추진계획

구 분	점 검 대 상		점검시기	점 검 방 법
중·대형 건축물점검	연면적 10,000㎡이상의 대형건축물		상반기 1회 점검 (2005.4.1~5.31)	전수조사
	연면적2,000㎡~10,000㎡미만의 중형건축물		하반기 1회 점검 2005.6.1~7.31)	
건축사대행 건축물	자치구 교차 점검	2,000㎡이하 소형건축물 다가구·다세대주택	분기별 점검	전수조사 (사용검사 6개월 후)
신고대상 건축물	- 신고대상 증축, 신축건축물, 가설 건축물		분기별 점검	사용승인분 중 25%이상
장기미준공 건축물	- 2003년도 이전 건축허가분 중 미사용승인 건축물 조사		상·하반기 점검 (년2회)	전수조사

시설위험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총143개소
 - 재난위험시설물 : 5개소(건축물 3개소, 절개지 2개소)
 - 중점관리대상 : 138개소(A급 38, B급 48, C급 52)
 - 대형건축물(15년이상 경과된 11층이상 또는 5,000㎡이상 건축물) : 64개소
 - 노후건물 및 기타시설 : 67개소
 - 대형공사장(10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0㎡이상) : 7개소

□ 추진 계획

- 점검기간
 - 재난위험시설물(D, E급) : 월1회(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등)
 - 중점관리대상 시설물(A~C급) : 년2회(반기별 1회)
- 점검방법 : 육안점검 및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주요 구조부의 균열, 노후화 및 위험요인 등
 - 공사장 위험요소, 비상연락망 및 공사장 주변 주민불편 등
- 시정조치 :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토록 독려 단계별 행정조치

□ 사업효과

- 재난발생의 위험성 해소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재난예방

옥상 Green화 정비 계획

□ 사업개요

- 관내 시각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옥상정비(창경궁, 종로타워)
- 건물옥상 바닥 GREEN화 및 건물 옥탑 미관 개선

□ 추진방법

- 신축건물
 - 건물 옥상 GREEN화 및 디자인 개선토록 건축허가시조건부여등행정지도
 - 건물 옥상 : 녹색계열의 경사지붕으로 유도하고 조경시설물 설치유도
 - 건물 옥탑 : 평스라브를 지양하고 녹색계열의 경사지붕 유도
- 기존건물
 - 옥상 적치물 및 안테나 정비, 옥상 세척, 도색, 조경시설물 설치 등 행정지도

에어컨실외기 정비추진

□ 추진배경

- 관련규정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 제3항
- 규정내용 :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정비기한 : 2005. 4. 30.

□ 추진실적

대상건수	정비실적	정비대상	비 고
660대	378대	282대	

□ 추진계획

- 정비대상 추가조사 및 정비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전달 정비 독려
- 건축허가시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 확보여부를 확인 하여 위치가 현행법령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조건부여 함으로써 사전에 위반행위 예방

전통문화 보존 육성

□ 추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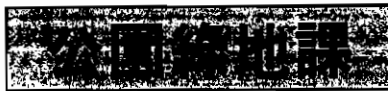
- 우리구 북촌마을, 인사동 및 문화재주변의 전통문화 보호육성

□ 사업개요

구 분	추진내용	비고
북촌마을 가꾸기사업	· 사전 서울시 『한옥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옥등록, 한옥수선 및 건축허가 후 관리	
인사동지구 단위소위원회운영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등 시행	
종로구문화재 보호자문위원회 사전자문	· 문화재보호구역주변은건축허가전 『종로구문화재보호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	

□ 추진계획

- 주민홍보 및 심의 등 절차에 따라 정비, 보호 및 관리로 우리구 전통문화 보존육성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물을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시설물로 교체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역주민과 어린이가 함께 즐겨 찾는 공원 환경을 조성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옥인동 187-2번지
- 사업기간 : 2005. 1 ~ 2005. 9
- 사업내용 : 조합놀이대, 기타 놀이시설물, 파고라 등 교체
- 소요예산 : 120,000천원(구비)

시공원 보수 정비공사

시 공원 5개소에 대하여 노후 된 산책로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시경관을 개선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삼청동 산2-1번지 외 4개소
(삼청, 인왕산, 와룡, 낙산, 사직공원)
- 사업기간 : 2005. 1 ~ 2005. 9
- 사업내용 : 산책로 보수, 단군성전 보수, 보상철거지 정비, 수목식재 등
- 소요예산 : 533,000천원(시비)

인왕산(청운지구)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된 청운아파트 철거 후 녹음이 풍부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청운동 산4, 7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005. 5. ~ 2006. 6
- 사업내용 : 청운아파트 철거 후 공원조성
- 소요예산 : 1,400,000천원 ※ 2005년 : 890,000천원 확보

주택가 얹아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

태풍이나 집중호우시에 주택가, 도로변, 등산로 주변에 있는 아카시아나무 등이 넘어질 경우,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위험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주택가 및 도로변 등 전지역
- 기 간 : 2005. 5. ~ 2005. 12
- 내 용 : 위험수목 제거(500주)
- 소요예산 : 60,000천원(구비)

학교공원화 사업

학교 운동장 주변 공지를 공원화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생활권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원녹지로 제공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매동초교, 대동정보산업고, 상명대부속고, 경기상고
- 기 간 : 2005. 1. ~ 2005. 11
- 내 용 : 담장개방, 수목식재, 녹지 및 쉼터조성 등
- 소요예산 : 440,000천원(시비)

종묘뒤 주거취약지역 녹지조성 사업

종묘 뒤 권농동 93번지 일대는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고궁주변에 인접해 있으나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하고 대부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실정으로 녹지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권농동 93번지 일대
- 기 간 : 2004. 1 ~ 2005. 12
- 내 용 : 62필지 2,637.7㎡
- 소요예산 : 3,400,000천원 ※ 시비: 2,500,000천원, 구비: 900,000천원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

의안 번호	1080
----------	------

제출일자 : 2005. 2. .

제 출 자 : 종 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2004.3.11)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별도로 운용되어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의 조성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함.(안 제2조)
- 나.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안 제3조)
- 다. 재난관리기금 전용 계좌를 설치·관리하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함. (안 제4조)
- 라. 재난관리기금 용자신청은 구청장에게 함. (안 제5조)
- 마. 회계관계공무원은 건설교통국장(기금운용관)과 치수관리담당주사(기금출납원)로 함.(안 제6조)
- 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8조)
- 사.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2005년도 368,844천원 확보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2) 제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4. 재난관련 장비구입
5. 서울특별시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시설 정비사업
6.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출납 및 보관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금고로 하되,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 총액의 100분의30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

용·관리하여야 한다.

③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자)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용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용자금의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 치수관리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치수관리담당주사가 되고,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중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통합되는 기금으로 승계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재해계좌 및 재난계좌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통합되는 재난기금계좌의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은 2005년 2월 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제정 이유

-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2004.3.11)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 각각 별도로 운용되어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려는 것임.

II. 주요 골자

- 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의 조성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함.(안 제2조)
- 나. 재난관리기금 전용 계좌를 설치·관리하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함.
(안 제3조)
- 다.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안 제4조)
- 라. 재난관리기금 용자신청은 구청장에게 함. (안 제5조)
- 마. 회계관계공무원은 건설교통국장(기금운용관)과 치수관리담당주사(기금출납원)로 함.(안 제6조)
- 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안 제8조)

사.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12조)

III. 검토의견

가.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중 재난 및 재해관련 일부내용을 흡수 통합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기금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바,

다. 조항별 내용 검토 결과, 2004년 9월 24일 각 자치구로 시달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과 서울시 조례안에 기초한 것이어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기타 입법 형식상 제기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IV.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④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 ②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32조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등) 령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하 제33조 및 제34조에서 같다).

1.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의 위험이 높거나 우려되는 시설
2. 주요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판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사업
5.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6.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7.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 지방재정법

第64條 (金庫의 設置)

-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소관 現金과 그의 所有 또는 보관에 속하는 有價證券의 出納 및 보관 기타의 金庫業務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金庫를 지정하여야 한다.